

특 허 심 판 원
제 5 부
심 결

심판번호 2016원1457

사건표시 2014년 특허출원 제96841호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의 센서
보호링』의 거절결정불복

청구인 윤덕규

서울 구로구 부일로1다길 37, 102동 102호(온수동, 태영렉스빌)

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

(역삼동, 예일패트빌딩,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결정 2016. 2. 4. 거절결정

심결일 2016. 12. 12.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청구취지

2014년 특허출원 제96841호는 특허결정한다.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14년 특허출원 제96841호(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경위

- ① 출원 : 2014. 7. 29.
- ② 의견제출통지 : 2015. 6. 19.
- ③ 명세서 등 보정 : 2015. 8. 19.
- ④ 거절결정 : 2015. 12. 21.
- ⑤ 명세서 등 보정 : 2016. 1. 21.
- ⑥ 거절결정 : 2016. 2. 4.
- ⑦ 심판청구 : 2016. 3. 7.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특허청구범위(2016. 1. 21. 명세서 등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본체부(10)와, 상부 캡(20), 공이 고정구(30), 습기에 의해 녹는 센서(30a) 및 카트리지(40)로 구성된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에 있어서, 상기 공이 고정구(30)와 고정구(30) 내부의 상기 센서(30a) 사이에 센서 보호링(30b)이 더 장착되어 보관시 공이 고정구의 깨어짐과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센서 보호링(30b)의 재질은 황동, 주석, 황동 알루미늄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

청구항 3. (기재 생략)

2) 주요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4-168160호(2004. 6. 17. 공개)에 기재된 '상시 착용형 구명조끼'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라. 원결정 이유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공이 고정구의 깨어짐과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센서보호링(30b)을 포함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에는 대응구성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위 센서보호링(30b)의 기능은 인용문현에도 내재된 것이므로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센서보호링은 비교대상발명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도 상시착용형 구명조끼에 적용되는 자동충기장치(8)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기술분야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우중 작업 시, 빗물이나 높은 습도에 의해 고정구 내

의 센서가 녹아 오작동하지 않도록 센서 보호링을 센서에 장착하여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공이 고정구의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를 제공하는 것(문단[0010])을 목적으로 하고, 비교대상발명도 빗물이나 파도비말에 의해 자동가스충기장치가 오작동하지 않는 상시 촉용형 구명조끼를 제공하는 것(문단 [0018])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이 고정구의 깨짐을 방지하는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파손이 우려되는 개별 구성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설계경향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에는 특이성이 없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본체부(10)와, 상부 캡(20), 공이 고정구(30), 습기에 의해 녹는 센서(30a) 및 카트리지(40)로 구성된 구명조끼용 인플레이터	몸체, 캡(11), 물에 녹는 지심(紙芯)을 포함하는 팽창용 카트리지(9), 가스봄베(7)로 구성되는 자동충기장치(8)
2	상기 공이 고정구(30)와 고정구(30) 내부의 상기 센서(30a) 사이에 센서보호링(30b)이 더 장착되어 보관시 공이 고정구의 깨어짐과 인플레이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것	빗물 등에 의해 오작동되지 않도록 자동충기장치를 감싸는 내측 기실커버(1)에 환기시트(6)를 설치한 것

가) 구성 1

구성 1의 본체부(10), 상부 캡(20) 및 카트리지(40)는 각각 대응구성의 자동충기장치(8)의 몸체, 캡(11), 가스봄베(7)와 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의 공이 고정구(30)에 해당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비교대상발명에서도 격침(공이)에 의해

가스봄베(7)의 봉함판을 파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격침을 직선이동하도록 고정하는 격침 고정구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구성 1과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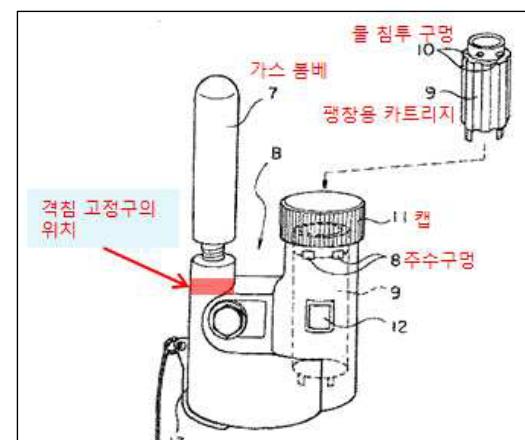
나) 구성 2(챙점구성)

구성 2의 센서보호링과 대응구성의 환기시트는 인플레이터(자동충기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2의 센서보호링은 공이 고정구(30)와 고정구(30) 내부의 센서(30a) 사이에 장착되어 보관시 공이 고정구의 깨어짐을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된 반면, 대응구성의 환기시트는 자동충기장치를 감싸는 내측 기실커버(1)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성 2에서 센서보호링이 오작동 방지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의 환기시트도 물의 침투 정도를 조절하여 오작동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양 구성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의 환기시트를 대신하여 팽창용 카트리지(9, 구성 2의 센서에 대응하는 구성)를 감싸는 오작동 방지 수단을 추가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구성 2의 센서보호링은 공이 고정구의 깨어짐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하는데, 이는 공이 고정구 내에 센서가 위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격침 및 격침 고정구는 가스봄베(7)의 봉함판을 파괴하기 위해 가스봄베의 직하부에 설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팽창용 카트리지는 가스 봄베와 병렬 방식으로 배치되어(도면 5), 격침 고정구와도 일정 거리 이격되어 설치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



명에 팽창용 카트리지를 감싸는 오작동 방지수단

<도면 5>

을 추가하더라도, 위 오작동 방지수단이 격침 고정구까지 보호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구

조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구성이고, 구성 2의 기능들이 비교대상발명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원결정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3) 대비결과 정리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나, 구성 2의 센서보호링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청 심사관에게 보내어 다시 심사에 부친다.

심판장

주 심

심판관

심판관

심판관

심판관

천세창

함중현

김기통

천세창

함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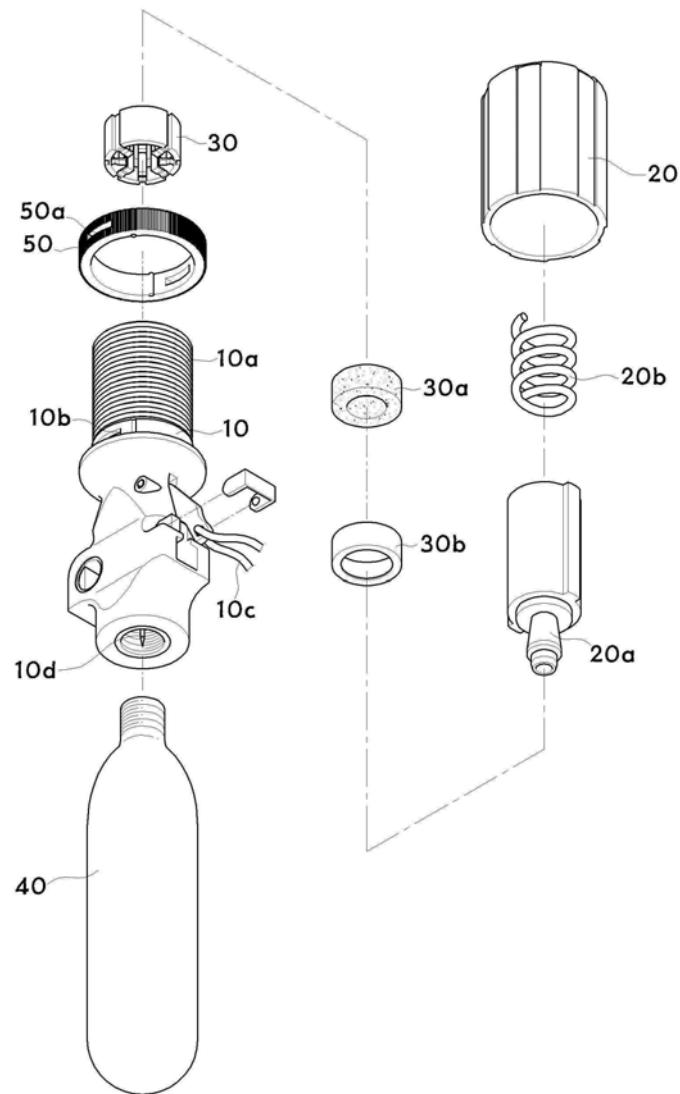
김기통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도면 4>



<도면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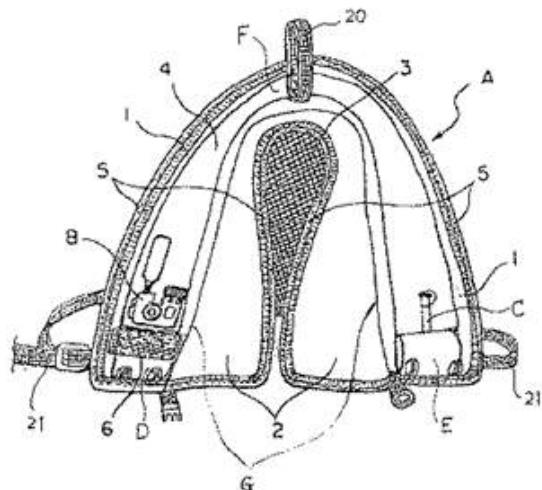
10: 본체부, 20: 상부캡, 30: 공이 고정구, 40: 카트리지, 50: 조절링, 10d: 공이
20a: 작동구, 30a: 센서, 30b: 센서 보호링,

1.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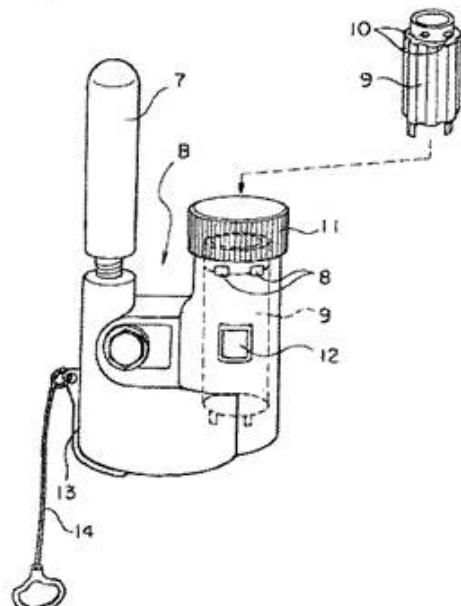
부력체(4)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동충기장치(8)로서, 가스봄베(7), 봄베의 봉함판, 봉함판을 파괴하는 격침, 격침을 수동조작하는 작동레버(13), 물침투 구멍(10)으로부터 물이 침투되면 녹아버리는 지심(紙芯, 종이 심지)을 포함하는 팽창용 카트리지(9)를 포함하되, 지심이 녹아버리면 스프링의 탄성을 격침에 전달하여 봉함판을 파괴하도록 구성된 자동충기장치(문단[0003]).

나. 주요 도면

<도면 1>



<도면 5>



<도면 부호>

- 1: 내측 기실커버, 3: 후방 자켓부, 8: 자동충기장치, 6: 환기시트, 7: 가스봄베
 9: 팽창용 카트리지, 10, 물 침투 구멍, 11: 캡